

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0. 9. 29.>

##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요청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(본점 소재지)	휴대전화번호: 주소지 전화번호:		
<p>[ ] 이해관계인(해당사유: 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해당 주택의 임대인 · 임차인</li><li>2. 해당 주택의 소유자</li><li>3.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</li><li>4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</li><li>5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</li></ol>				
<p>[ ]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</p>				
주택소재지 · 임대차목적물(건물명, 동, 열, 층,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)				
요청기간 _____년 ____월 ____일 ~ _____년 ____월 ____일				
요청정보				
요청내용	<p>[ ] 확정일자 부여현황(일반)</p>			
	<p>[ ] 확정일자 부여현황(임차인 특정) (임차인 성명: _____)</p>			
	<p>[ ] 확정일자 부여현황(임대인 · 임차인용) (임차인 성명: _____)</p>			
	<p>[ ] 확정일자 부여현황(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)</p>			
구분				
1. 열람 ( )      2. 출력물 교부 ( )				

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에 따라 위 주택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 성명:

주민등록번호:

(서명 또는 인)

읍 · 면 · 동장 또는 시 · 군 · 구  
출장소의 장 / 공증인 ○○○     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신청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및 출력물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### 위임자

(서명 또는 인)

위 임 받은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
	신청인과의 관계	전화번호

### 비고

- "확정일자 부여현황"이란 임대차목적물, 임대인·임차인의 인적사항(요청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),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·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을 말합니다.
- "확정일자 부여현황(임차인 특정)"은 특정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,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.
- "확정일자 부여현황(임대인·임차인용)"은 임대인·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,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(임대인·임차인)만 요청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.
- "확정일자 부여현황(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)"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그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 해당 주택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하는 것으로서, 인적사항은 임대인·임차인의 성명, 법인명 또는 단체명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첨부서류

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서류	1.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3.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
이해관계인	1.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주택 소유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.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.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600원
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	1. 임대인의 동의서 2.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	

### 유의사항

임대차 정보제공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에 따라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